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589,431,724	25,379,478
일반회계	492,674,837	14,780,245
특별회계	96,756,887	10,599,233
기타특별회계	9,718,762	291,563
· 주택사업특별회계	768,172	23,045
· 교통사업특별회계	4,825,500	144,765
·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	3,801,690	114,051
· 기반시설특별회계	323,400	9,702
공기업특별회계	87,038,125	10,307,670
·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3,149,125	3,000,000
· 하수도사업특별회계	43,589,000	1,307,670
·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20,300,000	6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543,245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